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

1.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(주택)

- 가. 수급인은 "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"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 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"자체 평가 이행확인서(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)"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
 - 1) 적용대상: '14.5.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(단, 500세대 이상)
 - 2) 제출시기 : 토목 준공일까지
 - 3) 제출부수 : 2부